

協力體制의 窓口을 마련키 위하여 이 會議에서 實務共同運營委員會를 구성키로 合議한 바 있고, 그 第1次會議을 87年 6月 30日 美國의 알링톤에 있는 美國防衛準備委員會(ADPA)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韓·美 防產共同運營委員會의 第2次會議은 87年 11月 중순경에 서울에서 開催하여 “共同研究開發 및 共同生産”, “질충교역 問題點과 機會”, “技術移轉問題” 등을 議題로 토의를 가지게 됩니다.

이번 美國에서 개최한 第1次 共同運營委員會 參席길에는 캐나다와의 防產協力을 모색해 보고자 캐나다外務省과 防產關聯協會도 방문하여 會議을 가진 바 있으며, 여러가지 事項들을 토의하였고 向後 相互訪問을 통하여 서로가 協力해 나가기로 合議를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本會에서는 海外協力活動을 통한 防產物資의 需要創出努力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會員社 여러분들도 海外防產協力活動에 적극적인 參與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特히 87年 5月 8~14日 까지 美國의 L.A市에서 개최키로한 韓·美 防產會議에는 많은 우리 防產業體들이 참여

하여 韓·美間 協力이 더욱 成熟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것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本 세미나도 이와 같은 防產協力 方案을 講究해 보고자 그동안 國防部와 國防研究院에서 연구해 온 “韓·美 防產協力 및 研究開發 政策發展 方向에 대한 案을 가지고 말씀드리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防產業界도 模倣產業이나, 技術導入生産에서 탈피하여 독자적인 武器體系의 研究開發에 의한 防產裝備의 國產化로 海外輸出을 伸張해 나가야 할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政府의 支援에 의존하던 研究開發體制를 業體 스스로가 主導하는 研究開發體制로 발전해 나가야 할때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研究開發體制로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防產業界는 다함께 努力해야 하겠으며, 그와 같은 體制가 構築될때 우리의 防產經營基盤은 튼튼해질 것입니다.

本 세미나가 비록 짧은 時間입니다마는, 有益한 방안이 많이 도출되어 防衛産業 基盤擴充에 도움이 될수 있다면 더없는 기쁨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한번 여러분께 感謝드리면서 아무쪼록 많이 傾聽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美 防衛産業 協力方案

—防衛産業 協力協定(MOU)을 中心으로—

黃 東 準

1. 서 론

70년대의 방산에 대한 열성과 의욕이 80년대에 와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13년동아 연구개발 투자를 해 왔으며, 그 성과는 괄목할 정도로 성장해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고도정밀분야에

더욱 정신적 방산 생산구조에 고도화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국제간 방산협력을 더욱 더 공고히 해야 하겠으며 미국은 우리를 직접 경영상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시 대응목표를 정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2. 미국의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인식 및 정책변화

가. 70년대 인식(미국의 한국방산 건설지원 배경)

- 1969. 7 닉슨닥트린 선포에 따른 한국의 자주국방 능력배양
 - '71. 3. 21 미 7사단 철수 및 '75년 월 남파망에 따른 정책변화
- 북괴의 계속적 도발에 대한 미국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한국국민의 미국 안보지원에 대한 불안감 해소
 - 한국군 장비현대화 계획추진
 - 방위산업 건설을 위한 기술지원
- * ◦ 미국은 안보지원 측면에서 한국의 재래식 기본병기 생산능력을 지원(기술자료 특허료 면제)
 - 한국의 민간산업 및 방위산업에 대한 발전능력

나. 80년대 인식

- 한국의 경제성장과 방위산업의 급속한 기반확대에 따라 안보지원의 관념으로부터 경쟁, 또는 요주의 대상으로 인식
- 미국의 정책변화
 - 한국 방산물자의 수출통제강화(특히 미국도 생산중인 품목에 대하여)
 - 면허 및 특허료 지불요구
 - 첨단기술이전 기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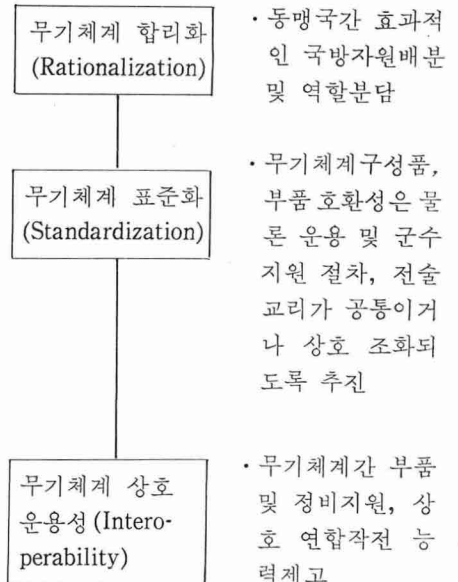
다. '86년 이후의 인식 및 정책변화

- 1) 미국 방위산업의 문제점(미 하원 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1980)
 - 방위산업 기반구조의 불균형
 - 주계약 업체수준은 초과능력 보유
 - 하청 및 부품생산능력은 심각한 능력 미달
 - 전시 긴급생산능력 및 조달시간의 장기간화
 - 기술 인력의 부족
 - 주요 구성품과 핵심원자재의 해외 의존도 심화
 - 생산성 증가의 둔화

- 새로운 기술, 시설, 기계에 대한 투자 저조
- 미국 해외 무기수출 기반의 지속적인 잠식
 - 미국 무기수출 '83, '84년 비교
 - '83년 102억불(세계 전체의 34.1%)
 - '84년 73억불(세계 전체의 22.5%)
 - 소련
 - '83년(16.2%)→'84년(32.4%)
 - 프랑스
 - '83년(5.9%)→'84년(28.2%)

2) 미국의 안보지원 정책방향

- 기본방향
 - 미국은 우방동맹국의 경제여건, 군사과학기술 수준, 미국의 지역 이해관계 정도에 따라 우방국과의 안보지원 협력관계를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의 무기체계 표준화 정책
 - 나토 무기체계에 추진중인 무기체계 합리화,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RSI)정책을 점진적으로 기타 우방국에도 확대하여, 연합 방위능력 향상은 물론 이를 통한 무기획득유지 비용절감과 지속적인 무기수출을 촉진하고자 함.



- * 미국과 나토 국가간 RSI 정책은 의회 차원에서 적극추진, 예산 뒷받침
 - Public Law 94~361 (Culvr-Nunn Ame-

ndment, 1977)

- 3) '86년 이후 한국방위산업에 대한 미국의 인식 및 정책변화
 - 한국의 산업발전 및 방산기술 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인정하여 양국간 무기생산 협력체제 모색
 - 미국의 무기수출 경쟁력 제고필요(생산성 향상)
 - 연구개발, 생산에 있어서 비용분담
 - 무기체계의 RSI 적극추진
 - * 1987년 Nunn-Quayle Amendment에 나토 국가의 한국, 일본, 이스라엘, 오스트라리아 포함
 - 양국 정부간 협력보다는 업체간 협력을 통한 실질 방산협력 추구
 - 양국간 공동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한 기술이전 회피 및 특허료등 비순환비용의 적극 보상방침
 - 1985. 8. 5 미국제품 및 기술판매에 대한 비순환비용 보상규정 신설 (DOD 훈령 2140. 2)
 - 미국 SDP의 국내 소요생산시 : 국방성 납품가격의 5%
 - 제 3국 수출생산시 : 국방성 납품가격의 8%
 - * 미국업체 : 미국내 사용시 3%
 - 수출시 3%

3. 한미 방위산업협력

가. 배경

- 제 17차 SCM 시 최초로 의제로 채택할 것을 미국에 제의 : 미국측 거부
- '86. 12월 한미정책 검토위원회(워싱턴)에서 제 19차 SCM에서 의제로 채택토록 합의
- 제 19차 SCM ('87. 5. 4~6 워싱턴)에서 한미 방산협력 기본원칙 합의(개념서 서명)
 - * 제 20차 SCM에서 협정체결 상호희망
- 제 1차, 제 2차 양국 업체간의 한미 방위 산업회의가 한미 방산협력 협정 체결을

가능케 하는 밑바탕이 되었음.

* 업체간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부차원의 협정 필요성을 양국이 인식

나. 양국이 방위산업 협정에 포함코자 하는 내용

1) 미국측

- 무기체계의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향상
- 공동이익에 바탕을 둔 무기체계의 공동 개발, 생산, 유지

* Nunn-Quayle Amendment의 적극 추진 (공동 연구개발) : 비용 분담

- 방산물자 및 비밀자료의 보호(산업 비밀 보호)
- 지적 소유권의 보호 : 로열티, 면허료 등 지급문제

2) 한국측

- 방산물자의 제도적인 미국방시장 참여
 - Buy American Act의 면제
- 한미 공동으로 제 3국 무기수출 확대
 - 미국 도태장비 제 3국 수출통제 철폐
- 미국 무기체계의 한국 방산구성품 및 부품의 활용
 - 업체대 업체협력강화 : 한국 방산업체의 Subcontractor 역할
- 미군 장비의 한국내 창정비 확대
- 한국 방산업체의 미 전시동원계획 참여
- 기술이전 및 자료교환 확대와 특허료면제 등

다. 우리의 달성목표 및 추진방법

1) 달성목표

- 미국의 방산협정 체결구분
 - (가) 미국과 NATO 국가간 : 제약없는 방산협정 (Open)
 - 연구개발, 생산, 조달, 군수지원 협력에 있어 방산물자 제한이 없음
 - (나) 미국과 이스라엘, 에집트 국가간 : 제한적인 방산 협정
 - 연구개발, 생산, 조달, 군수지원 협력에 있어 방산물자 제한
 - 분기별 또는 연간 품목 list 상호 작성
- 달성목표

—원칙적으로 미국과 NATO 식의 포괄 방위산업 협정체결을 시도

* 그러나 이스라엘식의 제한성 협정체결이 전망됨

· 30 일전에 의회에 통보하면 되므로 국방성의 부담없음

—한국측 포함내용을 적극 반영토록 하여 업체간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토록 함.

2) 추진방법

· 상호 호혜적인 조달협정 (Reciprocal Procurement MOU)과 방위산업 협력 협정 (Defense Industry Cooperation MOU: Umbrella Agreement)을 묶어서 한개 MOU로 추진

· 최초 협정안은 한국측 요구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대미협상 시도

· '87년 가을 PRS와 TCC에서 양국 상층 부분에 대한 집중협의 추진

* 예상 상층부분(MOU에 포함 여부)

· 제 3국 수출 문제

· 창정비 문제

· 특허료 면제

· 미 전사 산업동원 참여문제 등

· 금번 한미 방산협력 협정은 우리측 요구사항이 모두 포함이 안될 경우에는 포괄협정(Umbrella Agreement)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것들을 부록(Annex)에서 다룰 수 있도록 추진

(예) · 본 협정 : 한미 방산협력 협정

(ROK-U.S. Defense Industry Cooperation Agreement)

· 부록 1 : F-X Coproduction Program

· 부록 2 : ROK-U.S. Joint 3rd Country Sales Effort for Defense Items.

라. 한미 방위산업협력 협정 기본개념 및 내용

1) 목 적

· 군사장비에 대한 상호 보완적인 방위산업 생산능력을 발전, 유지

· 표준 및 상호 운용성 있는 군사장비의 사용촉진

· 연구개발, 생산, 조달 및 군수지원에서의 상호협력을 통한 군사장비 비용절감

· 양국의 비교우위에 의한 방위산업 생산 협력으로 국제 무기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

2) 기본개념 및 내용(요약)

· 협력의 범위(대상)

—최종제품, 구성품, 유지부품 등의 방산제품

—창정비를 포함한 용역(서비스) 분야

· 양국의 국방조달에 참여

—경쟁계약 절차에 의거 상대국의 방산제품을 획득하도록 추진

—양국 정부는 업체들에게 입찰에 필요한 사전정보(구매소요 및 시기) 및 시간을 충분히 제공토록 함

—자국의 방위산업 보호를 위하여 해외조달 제외 품목은 즉각 통보토록 함

· 양국의 국방조달 참여시 특혜조치

—모든 오판 또는 제안은 "Buy National" 법에 의한 가격차별 및 수입관세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

—상대국의 방산업체는 자국 업체와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함

· 양국의 방위산업 유지(가동률)에 필요한 무기수출확대에 공동 대처토록 노력

—미국의 첨단기술 및 설계능력과 한국의 제조기술 및 우수 기능인력을 활용한 군사장비 생산으로 국제경쟁력 제고

—한국이 생산중인 미 도태 군사장비의 제 3국 수출 제한철폐(대상 국가는 사전 선정) 및 로얄티 면제

· 지역 위기기시 한국방산업체의 활용추진

—재래식 병기생산 및 창정비 활용촉진

· 양국 정부간 기술이전 확대

—라이선스, 로얄티 및 기술정보 교환협상에 필요한 모든 정보제공

—방산관련정보 및 지적소유권이 관련된 기술이전의 확대

· 상호 호혜원칙에 입각하여

- 비 순환연구개발 및 생산비 보상면제
- 기술 및 비밀보호
 - 원 소유국가의 사전동보 없이 기술자료의 제 3국 이전불가
 - 협력에 의하여 제공되는 모든 비밀분류는 제공 상대국의 비밀분류 등급에 따름
- 방산업체의 참여
 - 업체대 업체의 협력을 적극 장려하고 양국업체의 생산능력 및 협력 필요분야를 상호 통보토록 함
 - 양국 정부는 본 업적의 적절한 시행지도에 대한 책임을 짐(비밀 유지사항등)
 - 양국 조달기관은 상대국 방산업체가 필요한 조달제안서 및 문서작성에 관한 정보제공
 - 양국 방산업체간의 정보교류 심포지움, 사업소개 및 사전 입찰회의 참여촉진
- 시행절차

- 한·미 년례안보회의(SCM)의 방산기술협력위원회(현 TCC의 개칭)가 본 협정의 추진을 주관함
- 미국측 책임 : 국방성 획득담당 부차관
- 한국측 책임 : 국방부 제 2 차관보

4. 결론 및 토의

- 우리의 방위산업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고도화 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필요
- 미국방 조달시장의 적극적인 침투
 - 부품, 구성품 생산의 하청업체로의 역할 강화
 - : 미국 업체간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 한미 방산협력 협정은 정부차원의 제도적 장치에 불과함
 - : 우리 방산업체의 질적 능력향상에 따라 성패가 좌우됨

